

의안번호	제 86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2월 일 (제296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0년 11월 30일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0년 11월 일

발 의 자 : 김희수 · 김봉희 · 박문희 · 정 현 ·
윤성옥 · 김종필 · 황규철 의원(7명)

의안 번호	86
----------	----

1. 제안 이유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5. 예산조치 : 사업의 규모,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 · 도비, 시 · 군비, 자부담 등 2010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

※ 2010년의 경우 9,974,750천원 확보

(국비 1,130,000 도비 1,479,850 시군 4,210,400 자부담 3,154,500)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

조약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산어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농수산물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제 7호에서 정의한 농산물과 식품,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 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산업법」 제 2조제 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에서 정한 농산물과 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법 ----- ----- <u>농수산물</u>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

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